

유엔사회권위원회 5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

작성 : 손잡고.

제출 : 2025.6.17.

손잡고는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업무방해죄 처벌 및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손잡고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정부보고서(2023.12.31 발행) 가운데 단체활동과 관련한 제6조, 제7조, 제8조 조항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작성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국제기구의 심의와 권고가 잘못 판단되어 대한민국의 노동권,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노동할 권리 및 제7조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 비정규직 고용

<p>2017.10.9 유엔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p>	<p>28. 위원회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조치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임시고용 등 비전형 고용이 만연한 상태라는 점에 여전히 우려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대기업들이 노동 비용을 절감하고 사고 위험 부담을 이전하기 위해 하청, 파견, 특수고용에 기대며 노동자들로부터 노동권 보호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제7조).</p> <p>29.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하지 않는 비전형고용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점에서 위원회는 (a) 노동법이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할 것 (b)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2007두1729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위반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여 입법 및 규제 조치를 취할 것 (c) 근로감독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권고한다.</p>
<p>2023.12.31. 5차 정부보고서</p>	<p>33. 최종권해 제29(a)문단 관련,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직종 내, 직종 간 노무제공 형태가 다양하여 실태조사 및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노동관계법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보호를 하고 있으나, 그 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무제공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무제공자 보호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2021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의 보호 대상에는 하청근로자를 비롯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p> <p>34. 최종권해 제29(b)문단 관련, 현행 「근로기준법」 제28조 등에 따라 부당한 계약 갱신거부를 당한 기간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듯</p>

	<p>부당한 계약 갱신거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입법조치는 도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울러, 무기계약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사용자는 원직복직 조치의무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 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과 비교했을 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시에만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p> <p>35. 최종견해 제29(c)문단 관련, 파견사업의 적법한 운영과 형식상 용역·도급의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하는 불법파견 시정을 위해 파견·사내하도급 제도 사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파견이 인정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유무는 모든 근로감독 시 필수 점검항목이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차별 담당 감독관을 지정하여 적극적인 차별시정 현장 지도·점검 체계를 마련하였다.</p>
--	--

<의견>

1. ‘비정규직 고용’ 부문에 대한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관련

- 1) 사회권위원회 권고 핵심 : a)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 b) 기간제 계약 갱신 거부 금지를 위한 입법 및 규제조치 c) 근로감독을 통한 감시 등을 권고했다.
- 2) 5차정부보고서 답변 : 현행 법-제도적 장치의 존재여부를 나열했을 뿐,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후 실제 권고가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 3) 정부 조사결과 누락 :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결과보고서’에 ‘완성차 사업장’ 등 파견법 위반이 문제된 주요 기업을 선정해 “불법파견 수사 및 근로감독 실태 및 개선”을 주제로 실시한 조사결과가 있다¹. 해당 보고서가 4차 사회권위원회 권고 이후 유일한 정부차원의 실태조사였지만, 해당 조사결과조차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5차 정부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 4)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은폐 : 국민청원을 통해 21대, 22대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2조① ‘노동자 정의’를 개정해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모두 노조법 상 노동자에 포함시키고, 2조② ‘사용자 정의’를 개정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의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해, 하청노동, 파견노동, 특수고용노동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입법을 시도했다. 윤석열 정부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 거부 등 극렬한 반대를 하며, 2조① ‘노동자 정의’는 배제됐고, 2조② ‘사용자 정의’를 포함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023.11.9.).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을 가로막았다(2023.12.1). 5차 정부보고서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 후 발행되었으나, 입법을 가로막은 사실을 은폐했다.

¹ 2018.9.12. 고용노동부 발행, 『고용노동개혁위원회 결과보고서』, “II-2 불법파견 수사 및 근로감독 실태와 개선”, 68쪽~128쪽. 2017.10.31.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에서 불합리한 관행과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조사 및 기록 보존을 통해 새 정부의 고용노동행정 개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 개혁 위원회(가칭) 설치·운영 계획(안)을 마련했다.

5) 5차심의 재권고 요청 :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고용 현황 및 노동법 적용 여부, 파견법 처벌 현황, 근로감독을 통한 감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실태 조사가 권고되어야 한다.

2.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 이후 국내 현황 상세

1) 최종견해 29a)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 부문

- 5차정부보고서는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노동기본권인 헌법 제33조 노동3권, 특히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경우, 원청을 대상으로는 사실상 제약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한 입법시도가 ‘노조법 2,3조 개정’임에도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행사로 입법이 좌초되었기에,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시도는 정부의 거부로 무산된 것이다.

- 5차정부보고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무제공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무제공자 보호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정부는 노조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입법추진한 ‘노동약자지원법’에서조차 노동자성을 배제했다².

2) 최종견해 29b) 입법 및 규제 조치

- 정부주장 : “기간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사회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행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가 실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업이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에 대해 파견법위반을 한 현대자동차의 경우, 노동위원회 판정 후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53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지만, 53억원을 납부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³.

- 하청 및 파견노동자의 권리구제의 핵심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산하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⁴.

- 법원은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부정 및 교섭 거부를 두고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⁵. 그러나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부분 기업이 상고까지 이어가기 때문에 법원 판단이 있더라도 법의 적용을 즉각적으로 받기 쉽지 않으며, ▲이마저도 부당노동행위를 다룬 노조 또는 노동자들만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법원 판단에 기대는 것에 한계가 있다.

-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을 위해서는 입법이 최선이다.

² 2024.05.16.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노동자성 뺀 노동약자 지원법, 정부 재정지원 수준 그칠 듯”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556>

³ 2014.10.0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⁴ 대법원 산하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도 “하청 및 파견 근로자의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와의 단체교섭이 항상 가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ILO의 입장과 대략 일치한다”고 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에 따라 노조법상 사용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사법정책연구원,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 2022, 364면)

⁵ 대법원 2007두8881-현대중공업,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748-CJ대한통운

3) 최종견해 29c) 근로감독관 파견 등 비정규직 남용 감시와 관련

- 정부 주장 : 5차 정부보고서에서는 “불법파견 시정을 위해 파견·사내하도급 제도 사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적극적인 차별시정 현장 지도·점검 체계를 마련”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2018.9.12.발행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 해당 조사위원회 조사대상 가운데 가장 피해 규모가 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조치를 살펴보면 제도가 현실의 파견법 위반을 제어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파견법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검찰 조치의 문제⁶

- ① 2004년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현대차 전 공장에서 파견법 위반을 확인해, 현대차를 검찰에 고발조치 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리했다.
- ② 2010년, 법원에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통해 ‘노동자들이 청구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 위반이 있음을 판결’(대법원 2008두4367 2010.7.22 / 2011두7076 2012.2.23)한 이후에도 검찰은 즉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는 파견법 위반 대상자 수를 파악하지도,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 ③ 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한 피해 규모만 현대자동차의 54개 사내협력업체 업체 3,463명, 노동자 추산은 6,000명에 달한다.
- ④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12년, 2013년 두 차례 국정감사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회피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⑤ 위원회는 파견법 위반의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와 검찰의 ‘직권 남용’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소장이 접수된 지 5년이 지나서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그마저도 사실상 전공정 불법파견이라는 법원 판결(2014. 9. 18.과 동년 9. 19. 2010가합112450)에도 위반 범위를 축소한 점, ▲검찰은 이마저도 일부는 불기소처리하며 사건을 축소했다고 보았다.
- ⑥ 즉, ▲근로감독관을 파견하더라도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불기소처분되거나 축소되고, ▲시정명령이 있더라도 곧바로 직접고용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에 조사위원회는 “○ 불법파견 판정기준 관련 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사내하도급 파견 관련 사업장 점검요령 등을 개정할 것, ○ 파견법 위반 감독 및 수사에 있어서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침 및 기준을 마련 할 것”을 행정기관에 권고했다.

- 조사위원회 권고 이후 현대차 파견법 위반에 대한 검찰 기소가 이뤄졌지만, 기소 후 6년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데 그쳤으며(2023.5.4 울산지방법원),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됐다.
- 조사위원회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결과, 완성차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다른 제조업 사업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같은 현대자동차그룹사 내 현대제철 주식회사의 사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⁶ 2018.9.12. 고용노동부 발행, 『고용노동개혁위원회 결과보고서』, “Ⅱ-2 불법파견 수사 및 근로감독 실태와 개선”, 91쪽~117쪽

정부 조사위원회 권고 이후 발생한 파견법 위반 사례 : 현대제철 주식회사

- ① 2016.2.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확인한 첫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⁷.
- ② 2021.2.18.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공장 사내협력사 5개사 11개공정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749명에 대한 파견법 위반을 확인하고 현대제철주식회사에 2021.3.22까지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 ③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같은 시기 현대제철주식회사 순천공장 사내협력사 5개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5개공정 516명에 대한 파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5개사가 근로자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사업장임을 확인하며 516명을 2021.3.22.자로 직접고용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 ④ 고용노동부는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현대제철 주식회사에 과태료 119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현대제철 주식회사로부터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했다.
- ④ 2021.6.8.~9.8. 현대제철 주식회사를 불법파견, 단체협약위반, 불법대체근로, 주52시간제 위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진정 및 고발했다.
- ⑤ 2022.12.1. 인천지방법원은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공장에 대해 '전공정 불법파견'을 확인했다⁸.
- ⑥ 2024.3.12. 대법원은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대해 불법파견을 판단하고 직접 고용을 판결했으나, 회사가 순천공장 배치를 거부해 노동자들은 승소를 하고도 부당전배를 다뤄야 했다⁹.
- ⑥ 잇따른 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검찰은 불법파견 등 현대제철 주식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소처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2024.10. 국감에서 이용우 의원은 "직접고용 시정지시 기한이 25일인데도 노동청은 28개월 후에야 형사입건을 했다"며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욱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범죄 인지가 늦어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2025.6.현재까지도 검찰은 기소하지 않고 있다¹⁰.

- 한편, 파견법 위반을 시정하지 않고 회사가 근로자지위를 다투는 노동자를 '업체폐업' 방식으로 정리해고하는 사례가 2025년 현재도 발생하고 있다.

업체폐업 및 정리해고 :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이수기업

- ① 2022.10.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으로 불법파견 대부분 공정에서 파견법 위반을 확인받았다. 그러자 운반공정을 담당하는 파견업체 이수기업의 소속 노동자 34명을 하청 업체 폐업 방식으로 정리해고 했다.
- ② 보통 업체 폐업을 하더라도 업체통폐합의 방식으로 고용승계를 해왔으나, 현대차가 고용승계를 거부함에 따라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공정에 대한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⁷ 2016.2.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합5135 / 2011가합5869 / 2012가합1284 / 2012가합2393 / 2013가합127(병합) 근로자지위확인

⁸ 2022.12.1.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0814 근로자지위확인 / 2016가합53004(병합) 근로에 관한 소송 / 2016가합59743(병합) 근로에 관한 소송 / 2016가합65411(병합) 근로에 관한 소송

⁹ 2024.3.12.대법원 2019다28966 근로자지위확인등 / 2019다28973(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 2019다28980(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 2019다28997(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 2019다29006(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¹⁰ 2024.10.15. 월간노동법률. "[2024 노동 국감] "기업들, 불파 판결에도 직접고용 안 해"...노동부 능력 행정 '뭇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16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163](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16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163)

- 종합하면, 2018년 완성차를 중심으로 한 정부차원의 조사보고서 및 권고가 있었으며, 관리감독 기관인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수사지휘의 문제 등이 드러났음에도 시정되지 않아, 권고 이후에도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능장대응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규모가 큰 대표적인 사업장을 소개했지만, 더 많은 피해 노동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정부 차원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비교표] 현대자동차그룹사 파견법위반 동종범죄 반복에 대한 고용노동부, 검찰 처분 및 파업권 행사에 대한 사측의 민형사소송 대응 현황			
4차 최종견해	쟁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현대제철 주식회사
제6조 노동할 권리 및 제7조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노동부 첫 판정일	2004.9.22.	2021.2.18
	직접고용 시정기한	2004.10.18.	2021.3.22
	시정인원 ¹¹	127개 업체 / 9234개 전 공정 / 1만명 이상	10개업체(당진5개+순천5개) / 11공정 1265명
	노동부 처분	이행강제금 53억원	과태료 119억8천만원
	노동부 처분 결과	납부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미납 (불복 후 행정소송 제기)
	파견법 위반 확인 첫 법원 판결 선고일	200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4124 근로자지위확인(아산)	2016.2.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합5135 / 2011가합5869 / 2012가합1284 / 2012가합2393 / 2013가합127(병합) 근로자지위확인(순천)
파견법 위반 확인 첫 대법원 확정 선고일	2010.7.22. 대법원 2008두4367 부당해고구제	2024.3.12. 대법원 2019다28966 / 2019다28973 / 2019다28980 / 2019다28997 / 2019다29006(병합) 근로자지위확인(순천)	

¹¹ 2004년 당시 노동청은 127개 업체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을 명령했지만, 인원을 적시하지 않았다. 2004년 확인된 현대차 불법파견 업체 중 하나인 예성기업의 당시 정직원이 87명인 점을 감안하면 127개 업체 시정인원이 1만명을 넘어 섰을 것으로 추산된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까지 판결 기간	최소 6년 / 최대 13년	최소 6년 / 진행 중
	국회 국정감사 채택	2013.10.30. 노동자만 참고인 출석	없음
	파견법 위반 검찰 첫 기소 1.노동부 기소의견에 대한 조치 2.노조 고발장 접수	2015.12.7. 1.2004년~2015년 이전은 대부분 불기소처분 2.2010.8.30. 금속노조 고발건 -> 기소유예 및 일부 불기소	2024.1.30. 1.순천 건만 기소, 당진 건은 4년째 기소하지 않고 있음 2.없음
	파견법 위반 최초 인지 후 검찰 기소까지 걸리는 기간	11년 (2004년~2015년)	8년 (2016년~2024년)
	파견법 위반 첫 형사처벌	2023.5.4.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3084/ 2020고단4162(병합) 파견법위반 (원청 사용자 처벌 제외, 주식회사에 벌금3000만원)	없음
제8조 노동3권	법원 판결 이후 사측 대응	2014.8.18. 합의 조건부 소취하로 '신규채용' 종료	2021.9.1. 자회사설립 파견법위반 피해자 논의 없이 일방 추진
	법원판결 이후 노조 교섭요구에 대한 사측 대응	교섭권 불인정	교섭권 불인정
	사측의 교섭권 불인정에 대한 고용노동부 대응	부당노동행위 불인정	부당노동행위 불인정
	파업권 행사에 대한 사측 대응	업무방해죄/업무방해방 조죄 형사고발 민사손배	업무방해죄 형사고발 민사손배
	파업노동자에 대한 손배 규모 금액 / 건수 /최초청구 대상	21,817,136,987 (약218억원) 15건, 680명	24,610,000,000 (246억1천만원) 2건, 641명

[제8조 노동3권]

○ 파업권

<p>2017.10.9. 유엔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p>	<p>38. 위원회는 (a) 합법파업이 되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제약적이어서 당사국 내에서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로막혀 있다는 점 (b)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지속되고 있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에 관한 보고 (c) 파업이 금지되는 "필수서비스"에 관한 정의가 넓다는 점에 우려한다.</p> <p>39.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수서비스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파업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이 파업권 침해에 이르게 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p>
<p>2023.12.31. 5차 정부보고서</p>	<p>57. 최종권해 제39문단 관련,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ILO 핵심협약 기준을 위해 노조법을 개정하고, 2021년 4월 협약 제87호, 제98호 등을 비준하였다.</p> <p>58.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및 형사처벌은 폭력·파괴행위 또는 사업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법원은 파업의 전격성과 막대한 손해 발생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는 등 업무방해죄 적용을 대폭 제한하여 노동조합의 파업권 행사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p> <p>59. 한편,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파업을 사전에 제한하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어 필수공익사업장에서도 파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쟁의행위를 허용하되 공익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대해서만 쟁의행위를 일부 제한한다. 한국은 노조법 제42조의2에 따라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ILO의 필수사업에 해당하는 병원, 전력, 급수, 전화 사업에 대해서도 파업을 사전에 제한하고 있지 않다. 국내법상 필수유지업무는 ILO의 필수사업 및 최소사업과 성격이 유사하고 그 범위도 ILO의 기준과 비교할 때 넓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업장별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노·사간 협정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의 의견도 폭넓게 반영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p> <p>60. 현행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범 외 구속 금지, 대체 근로·도급·하도급 및 파견 금지, 선제적 직장폐쇄 금지 등의 조항을 통해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정당한 쟁의행위에의 참가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 등 보복 조치는 노조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통해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감독기관에 고소·고발 등을 통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p>

<의견>

1. '파업권' 부문에 대한 사회권위원회 최종권해 이행 관련

- 1) 사회권위원회 권고 :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 “필수서비스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파업권이 효과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 “당사국이 파업권 침해에 이르게 되는 행위를 자제”,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 2) 5차정부보고서 답변 : 현행 법-제도적 장치의 존재여부를 나열했을 뿐,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후 실제 권고가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찾아볼 수 없다. 사회권위원회는 '합법 파업의 요건을 완화'하라고 하였는데 정부는 '정당한 파업이면 보호하고 있다'는 식으로 사회권위원회 권고에 어긋난 답변을 하고 있다. 정리해고노동자, 파견·하청·특수고용 등 노동권이 제한되어 합법파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은 지난 4차 심의에서도 위원회에 노동단체 의견으로 전달된 바 있다. 이같은 의견도 고려해 나온 최종 견해에 대해 정부는 '합법 파업 요건 완화'를 위해 지난 8년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 3) 국회 입법(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재의의결권 행사로 입법 거부(2023.12.1)
: 2023.11.9.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2조⑤ '노동쟁의' 정의에서 권리분쟁 등 합법적인 파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3조②를 신설해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자의 방위를 위한 손해는 면책하고, 3조③을 신설해 손해에 대한 인과성을 면밀히 따지도록 개인에게 부과하는 책임을 엄중히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좌절됐다.
- 4) 정부는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형사처벌이나 민사손배에 대해 정부차원의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한 바 없다¹².
- 5) 5차심의 권고 요청 : 파업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입법 조치에 대한 권고, 파업권 위축 사례(업무방해죄 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가압류, 압류조치 등)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2. '파업권' 부문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 이후 국내 현황 상세

1) 당사국에 “파업권 침해 행위를 자제하라는 권고”에 대한 현황 : 국가손배

- 5차 심의 기간에도 노동사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은 존재했음에도, 5차정부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시민사회에서는 쟁의행위참가 노동자에게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해 광우병춧불집회, 강정해군기지반대농성, 세월호진상규명집회, 민중총궐기 등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피해당사자와 시민단체가 모여 '국가손해배상대응시민모임'을 구성했다. 시민모임은 각 국가손배 원고인 경찰, 해군, 법무부, 청와대를 대상으로 소취하 요구 및 면담을 진행했다.
- 문재인 정부에서 집회 시위에 대한 국가손배청구사건 중 세월호집회, 민중총궐기, 강정해군기지반대농성에 대해서는 법원 조정을 통해 종결됐다.

¹² 단 윤석열 정부에서 21대 국회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 가압류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긴 했지만,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는 시민단체 손잡고가 만든 '33.3 손배가압류소송기록 아카이브'에 기반하고 있어 자체조사라고 볼 수 없다. 해당 아카이브는 제작배경에 '민간단체가 취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로, 전수조사가 아님'을 분명히하고 있다. 제대로된 피해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 그러나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 및 연대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손배소송에 해당하는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파업에 대한 국가손배사건¹³과 ▲2012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연대에 대한 국가손배사건¹⁴에 대해서는 끝내 소취하지 않았다.

사회권위원회 권고 이후, 쟁의행위에 대한 국가손배 진행 경과							
쟁점	원고	피고	소제기일	확정일	최초청구금액	최종선고금액	비고
2009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¹⁵	대한민국 외 121명	쌍용차지부 외 103	2009.08.07	2024.02.05	2,054,449,780	166,883,307	재판기간 :15년 원고일부승 : 책임제한 원고90, 피고10
	대한민국	000외 43명	2009.10.07	2024.02.05	2,054,449,780		
	000외 120명	쌍용차지부 외 103	2009.10.29	2024.02.05	208,000,000		
2012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대한민국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외 5명	2011.10.06	2019.01.17	15,281,570	4,884,880원 2011.7.9.-2018.8.21.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집회발언 1인에 대해서만 배상 확정

- 추후 정부 진상규명으로 ‘국가폭력’이 인정되더라도, 노동사건에 대한 손배소는 취하지 않았다.

- ① 2019. 7. 26. 경찰청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 진압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했다. 이와 함께 파업참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집행된 임금 및 퇴직금 압류와 부동산 압류에 대해 가압류 조치 10년 만에

¹³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 맞서 쌍용차지부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한다. 이에 대해 국가(경찰)는 2009년 8월 4일과 5일 양일간 헬기, 기중기 등을 동원하여 진압작전을 실시했다. 진압 이후 경찰은 진압작전 과정 등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및 지부 조합원, 연대시민 등 개인10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은 물적피해 외에 진압 작전에 투입된 경찰들의 인적 피해를 주장했다. 상해를 입은 경찰들의 국가 부담 진료비, 그리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약 5억천여만 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¹⁴ 2011년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맞서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이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를 응원하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희망버스’가 조직되어 영도조선소 내외에서 시민들이 모여 집회시위를 했다. 그 과정에서 투입된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고, 1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등의 죄목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다.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대한민국과 당시 출동한 경찰 개인들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와 활동가 개인 등 총 6명을 대상으로 진압장비 손실 및 분실, 치료비 및 정신적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5,281,57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집회에서 발언을 한 ‘송경동 시인’에 대해 희망버스를 조직, 운영하는 핵심인물로서 시위대를 선동했다고 보고 청구액 모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진압장비 손실에 대해 진압 과정에서 손상 및 분실될 가능성이 높고, 시위참가자의 직접 행위로 인해 분실되거나 탈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한민국의 청구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단 경찰 개인에 대한 청구분은 1심에서 인정된 ‘송경동 시인’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했다.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소액사건으로 보고 별도의 판단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했다.

¹⁵ 각 제기된 세 건의 사건이 추후 병합됨. 33.3손배가압류소송기록아카이브 (www.savelaborrights.org),

① 2009가합3151 / 2014나1487 / 2016다26662 / 2022나199 / 2023다163
 ② 2009가합3922 / 2014나1494 / 2016다26679 / 2022나205 / 2023다170
 ③ 2009가합4314 / 2014나1500 / 2016다26686(병합-2016다26662)

해제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의 손배소송에 대한 '소취하' 권고에 대해서는 끝내 소취하지 않았다.

- ② 2019. 12. 17.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쌍용차 파업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정당성이 결여되고, 노동권 위축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및 소취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 ③ 2022. 6. 30. 대법원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 댓글부대 운영 및 여론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및 '송경동 시인'에 대한 여론조작 혐의도 인정됐으나, 경찰이 '송경동 시인'에게 제기한 희망버스 국가손배 건은 이미 확정된 이후로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

- 윤석열 정부 : 국회, 법원 의견에도 국가손배 조정 거부

- ① 2021. 8. 31.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소송 소취하 촉구 국회 결의안'(대표발의 이은주 의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경찰은 국회에 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답변했다.
- ② 2023년 진행된 쌍용차 국가손배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법원이 조정을 통해 개인에 대한 손배소 부분을 제외하는 조정안을 제안했지만 경찰측이 거부했다.

- 민형사 처벌 대상 : 연대시민, 파업기간 집회참가자에 대한 연대책임

: 법원은 두 국가손배 사건 모두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활동가', 집회에서 사회를 본 '시인' 등 참가자에 대해 대해 형사처벌하고, 형사처벌을 근거로 민사배상책임까지 결정했다.

2)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 보복조치 : 민사 손해배상가압류 현황

- 5차정부보고서는 파업권 행사에 대한 민형사조치에 대해 “불법파업에 대해서만 해당”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불법파업만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한 독립적인 조사가 전제 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독립적인 실태조사는 없었다.
- 반면 민간차원의 실태조사는 꾸준히 있었다. 2022.10.4. 고용노동부는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실태조사 발표”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시민단체 아카이브(손잡고 운영 사이트 2022.6.30.공개)를 기본으로”했다는 점을 밝혔다¹⁶.
- 소송기록 아카이브는 손해배상이 처음 제기된 1987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소송기록이 확보된 197건의 손배가압류사건의 381개 문건을 다루고 있다.

33.3 손배가압류 소송기록 아카이브 판결문 분석 요약¹⁷

① 쟁의행위 대상

: 94.9%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동조합만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10건에 불과했다. 단체행동권 행사의 책임을 개인에 물고 있는 것이다.

: 조건부 소취하 - 1심 기준, 일부 개인에 대해 '소취하'가 진행된 사건의 소취하 조건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포기(17건), 희망퇴직(11건), 노조탈퇴(5건), 기타(2건)이 있다. 개인에게 손배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이 손배소송을 파업권을 넘어 개인의 노동권행사를 위축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¹⁶2022.10.4. 고용노동부.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실태조사 발표”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046

¹⁷ 33.3 소송기록 아카이브 온라인 전시 : <http://savelaborrights.org/exhibits/show/ex-01/p01>

② 쟁의행위 원인

: 판결문에 적시된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은 가장 많은 82건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관련 분쟁이었고, 그 다음으로 많은 70건이 사용자의 불법행위(파견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노조파괴)였다.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유죄판결이 나도,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권 행사는 민형사상 면책되지 않았다. 다음은 해고(정리해고 포함) 43건, 집회 시위 참여 41건이 있다.

③ ‘불법파업’이라는 원고의 주장만으로 손해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 ‘준법 파업’에 대해서도 소송이 이뤄졌다. 1심판결 가운데 원고가 100% 승소한 건은 11건에 불과했다.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 원고가 100% 패소한 건은 37건으로 3배 이상이다.

④ 소송기간

: 1심 기준 평균 26개월, 최대 84개월이 걸렸다. 평생을 벌 수 없는 금액의 손해소송에 대해 대부분 노동자들은 물론 노동조합도 ‘공탁금’을 걸기 쉽지 않다. 따라서 소송기간은 선고가 날 경우 1차 이자(5%, 소송 선고일까지 기한 반영)와 바로 갚지 못할 경우 2차 이자(12%-20%, 갚을 때까지의 기한 반영)에 영향을 미친다.

- 국가인권위원회 지원으로 손해가압류 피해 노동자 실태 연구조사도 진행됐다.¹⁸

: 9개 사업장, 236명 손해소송 피해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남성 피해자의 30.9%, 여성 피해자의 18.8%가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답변했으며, 이는 일반 남성보다 19.6배, 일반 여성보다 14.3배 높은 수치이다. 연구에 참여한 김승섭 교수팀은 OECD가입국 가운데 자살률 1위인 한국에서 이같은 수치는 심각한 결과라고 우려를 표했다.¹⁹

- 민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소송기록, 실태조사 자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3)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 보복조치 : 업무방해죄 처벌 현황

-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처벌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전무하다.

- 손해소송의 사유가 된 업무방해죄에 대해 살펴보면,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로부터 파견된 활동가에 대해 외부인으로 규정하고, 업무방해죄 및 업무방해방조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2022.9.1. 대법원 2022도7771 업무방해죄(일부 인정된 업무방해방조)등

① 쟁의행위 배경 : 2004년 현대자동차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판정에 이어 2010년 파견법 위반을 확인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현대자동차사내하청노동자들로 구성된 비정규직지회에서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가 법원 판결에도 하청노동자란 이유로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자 노조는 쟁의행위찬반투표를

¹⁸ 2019.1.24; 국가인권위원회 지원, 김승섭 교수팀(고려대 보건역학과, 박주영, 최보경, 김란영), 와락, 손잡고, 『갚을 수 없는 돈, 돌아오지 않는 동료』 손해·가압류 피해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발표자료.

¹⁹ 2019.2.1. 시사인 594호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손배·가압류 소송 연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82>

거치고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② 검찰 기소 : 비정규직지회가 CTS 공장을 25일동안 점거한 것을 두고 검찰은 금속노조에서 파견한 미조직국장에 대해 “금속노조의 공문을 전달”해 “점거를 계속할 것을 지시”했다며 ‘업무방해방조’죄를 주장했다.

③ 법원 판결 :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비정규직지회에서 직책을 맡고 있지 않지만, 현대자동차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상징적인 인물”이라며 “영향력이 크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생한다며 독려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 등이 “농성을 유지 강화”했다며 업무방해방조를 인정하는 유죄 판결을 냈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파기환송심을 확정하며 35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 이처럼 상급단체 활동가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넘어 ‘업무방해방조죄’까지 책임을 묻는 등 쟁의행위 참가를 넘어 ‘독려’ 또는 ‘지원’까지 범죄로 만드는 것으로, 쟁의행위 참가에 대한 처벌은 판례를 통해 더 강화됐다.
- 업무방해죄 처벌이 민사손배로 이어지는 행태 역시 여전하다. 업무방해방조죄로 벌금 350만원이 확정²⁰ 후, 같은 파업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20억원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손해와의 인과성’, ‘단결권 위축’ 등을 들어 파기환송했으나, 2025.2.13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에게 업무방해방조죄로 벌금 350만원이 확정된 것을 근거로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²¹. 최초 청구 당시 청구대상이 29명이었지만, 현대자동차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하고 신규채용에 응하는 조건으로 일부 개인에 대해 조건부 소취하였다. 이에 당시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활동가 2명,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하지 않은 사내하청노동자 1명, 연대한 정규직노조 대의원 1명 총 4명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대상으로 남았다.
- 반면, 쟁의행위의 원인이 됐던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해 노동부 판정 기준 19년만에 유죄판결이 나왔으나 벌금 3000만원에 그쳤으며,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²².

현대자동차 파견법위반 처벌과 노동자 파업권 행사 형사 처벌 비교	
현대자동차 파견법위반	파견법 위반에 대한 파업권 행사
2004년 노동부 판정 이래 기소하지 않다가 11년만에 기소 원청 대표이사 정몽구, 정의선 제외	상급단체 활동가까지 ‘업무방해죄’, ‘업무방해방조죄’로 즉각 기소
2015년~2023년 7년만에 1심, 검찰 항소 포기	2013년~2022년 9년동안 파기환송, 재상고까지 5심
주식회사에 벌금 3천만원	벌금 350만원 +민사 손해배상 20억원(확정이자까지 35억원) 배상 근거거

4)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한 보복 조치 구제 방안

²⁰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372 / 울산지방법원 2014노781 / 대법원 2015도12632 / 부산지방법원 2021노371 / 대법원 2022도7771

²¹ 부산고등법원 2023나40 손해배상(기). 해당 사건은 시민들의 재상고 법률비용 모금으로 현재 대법원에 재상고 되어 있다. 대법원 2025다210862

²²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3084, 2020고단4162(병합)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 5차 정부보고서에서 쟁의참가 및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 조치는 “노조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감독기관에 고소·고발 등을 통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 2018. 9. 12 발표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제도운영에 대한 조사결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9.5%에 불과하고, 이는 일반 형사사건 45.7%에 비추어 기소율이 현저히 낮”다고 발표했다. 조사위원회는 “수사기관이 노동사건을 공안적 시각 에서 접근했던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매우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는 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노조간부에 대한 구속수사와 압수수색이 빈번히 이루어짐에도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하여는 강제수사 기법(구속수사 및 압수수색)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조사시점 기준, 2000년 이후 구속수사 사례 2 건에 불과하다고 확인했다²³.
- 결과적으로, 수집된 손해배상사건 가운데 노조무력화 시도 및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것을 근거로 보복조치로서 제기된 민사 손해배상에서 노동자가 구제 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²³ 2018.9.1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Ⅲ-2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245쪽)